

[별표 2]

자동차 및 운수산업 교통수단안전점검 착안사항

1. 일반현황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등록사항(차고지 등) 변경 신고 여부	· 관할관청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등록 등 관련 서류 · 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등록신청서 및 인가서류 ·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	· 사업계획 내용확인 · 면허기준대수와 배차일지 확인
지입·도급제 실시 여부	· 운전자 급여대장 · 의료보험 가입명부 · 수입금일보 · 정비관계철 · 배차일지	· 운전자 취업신고 여부 · 고정배차여부 · 부품 및 정비비 지출 여부 · 교대 현장 실사

2. 운전자 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 채용 여부	· 운전자 인사카드 · 운전자 이력서, 경력 증명서 · 운전자 자격증 · 운전적성정밀검사판정표 · 배차일지 등 승무기록	· 채용운전자가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 · 채용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 여부 확인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특별) 수검 여부	· 공단 및 조합의 운전정밀검사(신규, 특별 등) 대상자 통보 현황 · 사고보고서 · 운전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점수 · 운전정밀검사 판정표	· 운전정밀검사 대상자 통보 현황 및 사고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정밀검사 수검여부 대조(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자료)
운전자 입·퇴사 보고 여부	· 취업운전자 현황 · 운전자 입·퇴사 보고서 · 급여대장, 배차일지	· 취업운전자 및 입퇴사 보고서를 운전자급여, 배차일지와 비교 · 입·퇴사 보고일 준수여부 확인

2.1 운전자 공통 자격요건

운전자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여부	○ 운전경력증명서(속칭 무사고증명서) - 주소지 관할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관할경찰서 면허계에서 발행 · ·사업용 차량 경력자의 운전경력 증명기간은 운전면허 발급일로부터 응모일 시점까지 ○ 기타 - 이력서, 사진 등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운전자격증, 승무전 신규교육수료증(여객), LPG 안전 교육 이수증 등(원본을 제출받아서 회사에서 복사)
운전(적성) 정밀검사	○ 운전적성정밀검사 종합판정표(신규검사, 특별검사 등) - 교통안전공단에서 수검한 운전적성정밀검사 신규검사 적합 종합판정표, 특별검사 종합판정표 등 ○ 운전적성정밀 신규검사 적합판정 후 재취업하고자 할 때 - 신규 검사일로부터 3년 경과자 ◦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시 유 사고자 : 중상(화물 5주)이상의 사고 야기자 → 신규검사, 특별검사 모두 수검 필요 : 경상 및 물적사고자 → 신규검사만 수검 필요 ◦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시 무사고자 : 재발급 받아 사용가능 - 신규 검사일로부터 3년 이내자 ◦ 사업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시 유사고자 : 중상(화물 5주)이상의 사고 야기자 → 특별검사 수검 필요 : 경상 및 물적 사고 야기자 → 재발급 받아 사용가능 ◦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시 무사고자 : 재발급 받아 사용가능

2.2 업종별 운전자 자격요건

여객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운전면허 보유 ○ 20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운전경력 확인 - 운전경력증명서(무사고증명서) 확인(취소 및 정지기간 제외)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 운전자격의 취득(택시 및 버스 운전자격)
화물운송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자격요건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화물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증을 소지할 것 ○ 20세 이상인 자로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 자

3. 운행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부제운행 준수 여부(택시)	· 운행일보, 배차일지 · 실차	· 자동차등록증과 실차일치 여부 · 부제차량 번호와 차고지 주차여부 확인
면허·등록 노선위반 운행(버스)	· 사업계획서 · 운행노선·운행계통인가 관계철 · 운행관계기록	· 사업계획서와 노선·운행계통도 및 운행관계기록 대조확인

4. 교육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신규채용 운전자 교육 실시 여부(여객)	· 교육수료증 · 채용 및 발령대장 · 배차일지 및 승무기록	· 채용운전자에 대한 승무전 교육(16시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운전자 보수교육 실시 여부	· 교육수료증 · 배차일지 및 승무기록	·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

5. 교통사고 예방대책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교통사고관리 대장 작성 및 관리 여부	· 교통사고관리대장 · 교통사고보고서	·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개요내용·피해상황·사고지점 약도, 사고현장 사진 등 관리 여부 확인
중대교통사고 보고 여부(여객)	· 교통사고관리대장 · 교통사고보고서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시 개략적인 상황 보고(24시간 이내)와 사고보고서 작성 제출(72시간 이내) 유무를 점검

5.1 중대 사고보고

보고 시기	○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 시 24시간 이내에 사고의 개략적인 상황을 보고후 72시간 이내에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		
중대 사고 의 보고 기준	구 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정의	○ 사망자 2인 이상 ○ 사망 1인 및 중상자 3인 이상 ○ 중상자 6인 이상	○ 다음의 사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한 경우(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명 이상의 중상자 발생시)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나. 화물차의 정비불량 다. 화물차의 전복 또는 추락. 다만,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
	보고 시기	○ 시·도지사에게 24시간 이내 사고의 일시, 장소 및 피해사항 등 개략적인 사항(개인택시 생략가능), 72시간 이내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면보고	○ 보고의무 없음

6. 자동차 관리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운전자격증명 게시 여부	· 실차 확인	· 자격증명 게시 운행여부 실차확인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난방 및 냉방장치 설치 여부(버스)	· 실차 확인	· 운송시설의 설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작동여부를 확인
안내방송장치 및 정차 신호용 부저 작동 여부(버스)		
전자감응장치, 가속페달 잠금장치 설치 및 작동 여부(버스)		
소화기·비상탈출용 망치 등 관리상태(버스)		
차내실내표지판 게시 여부(버스)		· 회사명, 자동차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게시여부 확인
정기검사 수검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 자동차검사 영수증	· 자동차등록증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내 검사했는지 점검(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정비 작업범위 초과 여부	· 정비시설 대장 · 자동차정비일지 · 자동차정비기록원부	· 정비시설 보유여부 확인 후 법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비를 실시하는지 확인
자동차의 표시(운송사업자의 명칭, 자동차의 종류 등)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실차확인	· 자동차에 식별하기 쉽도록 운송사업자의 명칭 등 표시여부 확인
등록번호판 및 등화장치 적정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실차확인	·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의 일치여부, 봉인의 훼손 및 식별 곤란여부 확인 · 등화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운행기록장치 설치·작동·보관·활용 여부	· 운행기록분석시스템 · 6개월 이상의 운행기록 자료	· 차량별로 운행기록장치를 설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 · 운행기록을 법령에 맞게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 분석결과를 사고예방 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
좌석안전띠 상태	· 실차확인	· 구조 및 장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작동되는지 실차확인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운행 여부		· 타이어의 편마모·파손 및 기준(트레이드 홈 깊이 1.6mm 이하)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버스)		· 앞바퀴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

점 검 항 목	점 검 자 료	점 검 방 법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운행 여부(화물)		· 화물차의 덮개·포장·고정장치 장치 유무 확인
차량구조·장치 임의 변경 여부	· 자동차등록증 · 실차확인	· 자동차등록증의 제원과 일치여부 · 자동차등록증상의 구조변경내역과 실차대조
승합자동차 운전자 격벽 장치 설치여부	· 실차확인	· 2006년 4월 1일 출고된 시내버스

6.1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노선 버스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동차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회사명·자동차번호·운전자성명·불편사항연락처 및 차고지 등을 기재한 표지판 - 운행계통도 ○ 하차문이 있는 노선버스(시외직행·시외고속 및 시외우등고속은 제외한다)는 여객이 하차시 하차문의 닫힘으로써 여객에게 상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 하차문의 동작이 멈추거나 열리도록 하는 압력감지기 또는 전자감응장치를 설치하고, 하차문이 열려 있으면 가속페달이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가속페달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 난방장치 및 냉방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버스의 경우 도지사가 운행노선상의 도로사정 등으로 냉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차 안에 냉방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의 차 안에는 안내방송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정차신호용 버저를 작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 버스의 차체에는 목적지를 표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

6.2 정비시설 및 인력

정의	○ “자동차정비시설 등” 이란 다음 표에 규정된 사항을 말함
----	-----------------------------------

	구 분	내 용					
	1. 차고	보유자동차의 일상점검과 정비에 지장이 없는 면적의 차고를 갖출 것					
	2. 기계·기구	가. 휠 밸런서 나. 공기압축기 다.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라. 스프레이건 마. 부동액회수재생기(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부동액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사·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정비업시설기준과 같다. 다만, 작업장 면적과 점검·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술인력	가.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것 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보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일 것					
기본 시설 장비 기준 의 예	○ 경기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시설 장비의 예						
	구 분 \ 업 종 별		자동차종합 정비업	소형자동차종 합정비업	자동차전문 정비업	원동기전문 정비업	
	시설면적	작업장·검사장·사무실·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	1,000㎡ 이상	400㎡ 이상	50㎡ 이상	300㎡ 이상	
	시설 및 장비	1. 검사시설(핏트 또는 리프트)	○	○	○		
		2. 체인부록(1톤이상)				○	
		3. 도장시설(스프레이건 포함)	○	○			
		4. 부동액회수재생기	○	○	○	○	
	정비·검사 기구	1. 제동시험기	○	○			
2. 전조등시험기		○	○				
3. 사이드슬립측정기		○	○				
4. 속도계시험기		○	○				
5. 일산화탄소측정기		○	○	○	○		
6. 탄화수소측정기		○	○	○	○		
7. 매연측정기		○	○	○	○		
시험기 및 측정기	1. 연료분사펌프시험기	○	○		○		
	2. 노즐시험기				○		
	3. 압력측정기	○	○		○		
	4. 회전반경측정기	○	○	○			

		5. 휠밸런서	○	○	○	
		6. 토인측정기	○	○	○	
		7. 캠버캐스터측정기	○	○	○	
		8. 엔진종합시험기				○
	공작 기계	1. 실린더보링머신				○
		2. 실린더호우닝머신				○
		3. 밸브시트그라인더				○
		4. 밸브시트카터				○
		5. 크랭크연마기				○
	비고					
	1. ○표는 갖추어야 할 사항을 말한다.					
	2. 자가자동차만을 정비·관리하기 위한 조건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디젤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측정기 및 탄화수소측정기를,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만을 보유한 경우에는 연료분사 펌프 시험기 및 매연측정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6.3 정비작업범위

구 분		정비작업범위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원동기		◦에어클리너엘리먼트의 교환 ◦오일펌프를 제외한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머플러의 교환
동력전달 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액셀레이터케이블의 교환 ◦클러치케이블의 교환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호스·페달 및 레버의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
주행장치		◦허브베어링을 제외한 주행장치의 점검·정비 ◦허브베어링의 점검·정비(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완충장치		◦다른 장치와 분리되어 설치된 속업쇼바의 교환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원동기	◦실린더헤드 및 타이밍벨트의 점검·정비(원동기의 종류에 따라 매연측정기·일산화탄소측정기 또는 탄화수소측정기를 갖춘 경우에 한한다) ◦윤활장치의 점검·정비 ◦디젤분사펌프 및 가스용기를 제외한 연료장치의 점검·정비 ◦냉각장치의 점검·정비 ◦배기장치의 점검·정비 ◦플라이휠(flywheel) 및 센터베어링(centerbearing)의 점검·정비
	동력전달 장치	◦클러치의 점검·정비 ◦변속기의 점검·정비 ◦차축 및 추진축의 점검·정비 ◦변속기와 일체형으로 된 차동기어의 교환·점검·정비
	조향장치	◦조향핸들의 점검·정비
	제동장치	◦오일의 보충 및 교환 ◦브레이크 파이프·호스·페달 및 레버와 공기탱크 점검·정비 ◦브레이크라이닝 및 케이블의 점검·정비
	주행장치	◦차륜(허브베어링을 포함한다)의 점검·정비
	완충장치	◦속업쇼바의 점검·정비 ◦코일스프링(속업쇼바의 선행작업)의 점검·정비
	전기장치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기타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부분도장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세차 및 새시 각부의 급유

6.4 자동차 표시확인

여객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9조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1. 시외우등고속버스 : “우등고속” 2. 시외고속버스 : “고속” 3. 시외우등직행버스 : “우등직행” 4. 시외직행버스 : “직행” 5. 시외우등일반버스 : “우등일반” 6. 시외일반버스 : “일반” 7.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세” 8. 한정면허를 받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의 경우에는 “한정“ 9.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장의“ 10.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의 종류 및 관할관청[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 자동차의 종류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모범” - 관할관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11. 마을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마을버스”
화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8호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을 표시할 것

6.5 운행기록장치

개념	○ 자동차의 속도·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로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말한다.(교통안전법 제55조, 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 제2조)
설치 대상	○ 설치대상 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 운행기록장치 장착면제 자동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기록의 보관 및 활용	○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른 운행기록 6개월간 보관 유무와 자료 요청 시 제출 유무 확인 ○ 운행기록의 점검·분석결과를 운행관리·운전자의 교육·훈련자료 활용

6.6 어린이통학버스

○ 도로교통법 제52조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자가 도로교통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 1호부터 5호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8항, 제9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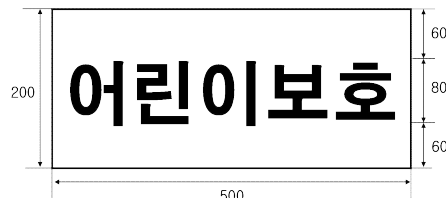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앞과 뒤에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붙이거나 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어린이 보호표지

1. 앞면 부착용 표지



2. 뒷면 부착용 표지



- (주) 1.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한다.
2. 재질은 두께 1밀리미터 이상의 아크릴이어야 한다.
3. 글씨는 고딕체로 하고, 그 높이가 앞면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70밀리미터 이상, 뒷면 부착용 표지의 경우에는 80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간격은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제1항제4호

- 어린이통학버스의 승강구 제1단의 발판높이는 30센티미터 이하일 것
- 제2단 이상의 발판높이는 20센티미터 이하일 것. 다만, 15인승 이하의 자동차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비고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수단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교통안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착안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